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2003.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 이유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충청북도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함(안 제2조).
- 장학생의 수는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함(안 제3조).
-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함(안 제4조제1항).
-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교육감은 청주교대 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매년 협약 체결(안 제11조)
- 장학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제상(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불 입 참 조

☐ 참고사항 : 입법예고(2003.07.04~2003.07.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이하 “공립초등학교”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청주교대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장학금)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지급기간을 이유로 제7조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
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
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
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자퇴한 때
3. 공무원 임용 결정사유가 발생한 때
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

제10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
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
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입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청주교대 총장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매년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소요자원)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청주교대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